

제 호

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

1. 기관명:

2. 대표자:

3. 주소:

위 기관을 「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해양수산부장관
시·도지사

직인